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김중학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905-209998	신청일	2019-05-12 17:49:52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김중학		
연락처	031-721-0953	휴대전화	010-5324-3467
주소	[133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cgiso@naver.com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반드시 경찰청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보기	제목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 대하여 1.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를 했는데, 경찰관은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하여 이전 고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사하며 각하한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것으로, 범죄수사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무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입니다. 즉 이전 고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사건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 이전 고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4. 경찰관의 조사의 기준을 묻는 것이므로, 반드시 경찰청에서 답변해야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기피신청정보]

기피대상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기피사유	경찰관의 조사의 기준이므로 경찰청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담당자(연락처)	이지민 (02-3150-1676)		
접수일	2019-05-13 11:32: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905-239181
답변일	2019-05-21 20:44:36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20999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를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2005모472’ 판례를 인용하여 이전 고소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 다며 각하한다고 함.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에 관한 판례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 재심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중략)...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위 ‘기판력’이 발생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증거의 신규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 위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판결의 확정력이 손쉽게 부인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과 - 헌법에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 피고인의 과실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판례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기판력에 따른 ‘법적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시한 것이며, - 수사의 종결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못하므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와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는 각각 ‘법적안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증거의 신규성’에 관한 위 판시의 취지를 문언 그대로 수사종결에도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각하’사유로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조항		

을 두고 있음 ▶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42조는 사건의 ‘반려’사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이라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소제기 되지 않는 상태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지 여부는 새로운 증거로 인하여 새롭게 범죄 혐의가 의심(주관적 인식)될 정도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계 경위 이지민(02-3150-1676)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table border="1"> <tr> <td>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td><td>2019.05.21.</td></tr> <tr> <td>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td><td><매우만족></td></tr> <tr> <td colspan="2">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 <td>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td><td><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td></tr> <tr> <td>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td><td><해결></td></tr> </table>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9.05.2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9.05.21.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만족>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인쇄